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34
결재일자	2016. 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2호

주우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진주	이정희	이운영	대이운영	이비오	01/28 정원오
협조	이상수				
	법제팀장	전지영			
	주우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소통분야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이해당사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고려사항	일 자리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인 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 울 시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type="checkbox"/> 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제목 : ● 중점 홍보사항 - - 	
<p>※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2016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 운영계획

2016. 1.



성 동 구

(기획예산과)

- 2016년도 -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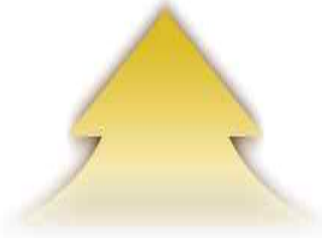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동을 추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II 추진방향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안정적 운영

보조금관리기준에
따른 사업 운영

보조금관리시스템
확대 시행

보조금 공모절차
이행 및 성과평가

III 2015년도 추진성과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위원회 구성: 12명
 - 위촉직: 9명(변호사2, 세무사1, 회계사1, 교수4, 전직공무원1)
 - 당연직: 3명(기획재정국장 외 2명, 심의 안건별 임명)
 - ※ 위 원 장: 주성수 위원(한양대 시민사회학과 교수)
 -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간사: 기획예산과장
- 운영실적
 - 보조금관련 조례안 제·개정 사항 타당성 심의
 - 총 6개 부서, 8개 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
 - 지방보조금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총 8개 공모 사업, 사업비 572백만 원 심의
 - 2016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

총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비고
106건/67,423백만 원	54건/2,686백만 원	52건/64,737백만 원	



②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사업분야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
- 추진현황
 - 전체 보조사업 근거 현황 조사: 2015. 3월 ~ 4월
 - 보조사업 담당팀장 및 관련 부서 회의 개최: 2015. 7월
 - 보조금 조례개정: 2015. 8월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시

- 추진근거: 구청장 방침 제683호[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계획]
- 사용대상: 공모대상 지방보조사업
- 추진실적
 - 시스템사용 업무협약 체결(2014. 12월)
 - ※ 3자협약: 성동구청, (주)우리은행, (주)우리카드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교육일시: 총 3회(2015. 4월)
 - 교육장소: 구청 5층 전산실
 - 교육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부서 사업담당자
 - 교육주관: 우리은행

IV 2016년 세부 추진계획

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및 강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성동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추진시기: 익년도 2월말 이내
- 평가대상: 2015년 자체 보조사업(국·시비보조사업 등 일부 제외)
- 추진일정
 -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과 평가: 2016. 2월까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주관 유지필요성 평가: 2016. 3월
 -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
- 향후계획: 단계별 평가확대
 - 1단계(2016년도): 2016년도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붙임 1) 작성 및 제출
 - 2단계(2017년도): 2016년도 결과 분석 후, 국·시비보조사업 확대 검토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정적 운영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개최일시: 분기별 개최
- 주요기능: 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구의회에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조례안,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등 심의
- 추진일정
 - 2015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심의: 2016. 3월
 - 보조사업 공모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관련조례안 심의: 2016. 3월~12월
 - 보조금 예산편성(안) 심의: 2016. 11월

③ 지방보조금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대 상: 모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 ※ 단, 법 제32조의2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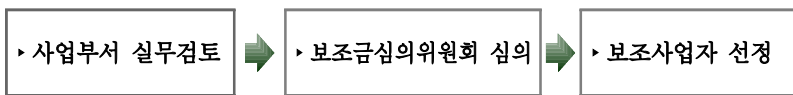
- 공모시기: 사업에 따라 수시
- 공모방법: 사업별 공모 원칙

※ 단, 민간단체 보조금(舊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 일괄공모 예정

- 공모심의

· 주 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방 법



④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 추진근거: 구청장 방침 제683호[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계획]
- 사용대상: 전체 지방보조사업(※ 2015년: 공모대상 보조사업만 시범 실시)
- 기 능: 집행내역 실시간 조회 및 이력관리, 정산처리 등
- 추진계획: 단계별 사용확대
 - 1단계: 2016년도 전체 지방보조사업 우선 사용
 - 2단계: 2016년도 사용 성과 분석 후, 민간위탁 사업 확대 검토
- ※ 시스템 교육: 2016년 3~4월 예정(교육주관: 우리은행)

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시기: 매년 10~11월
- 심의내용: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 심사
- 주 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V 주요 추진 일정

구 분	1~2월	3월	4월	5~8월	9월	10~11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분기별)						
-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						
- 조례안에 대한 심의						
-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 공모(수시)			연	중		
-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자 공모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익년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도점검			연	중		

VI 행정 사항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과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소관 부서
 - 지방보조금 공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시 소관 부서
- ※ 민간단체 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공모(2월 중)

- 붙임 1.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 서식 1부.
2. 성동구 민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